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관련〉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77호)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48호)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92호)

2025. 2.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6

I. 제안경위

1.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가. 발 의 자 : 고민정 · 윤종균 · 강유정 · 추미애 · 전현희 · 민형배
김 윤 · 모경중 · 김성희 · 김영호 의원(10인)

나. 제 안 일 : 2024. 12. 30.

다. 회 부 일 : 2024. 12. 31.

※ 의안번호 : 7077

2.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가. 발 의 자 : 정진욱 · 민병덕 · 모경중 · 박상혁 · 채현일 · 신영대
한민수 · 임광현 · 안규백 · 맹성규 · 김한규 · 복기왕
박희승 · 서미화 · 송재봉 · 김영환 · 이훈기 · 양부남
의원(18인)

나. 제 안 일 : 2025. 1. 6.

다. 회 부 일 : 2025. 1. 7.

※ 의안번호 : 7248

3.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가. 발 의 자 : 신장식 · 김준형 · 차규근 · 김선민 · 서왕진 · 민병덕
김재원 · 이해민 · 이기현 · 윤준병 · 이수진 의원
(11인)

나. 제 안 일 : 2025. 1. 16.

다. 회 부 일 : 2025. 1. 17.

※ 의안번호 : 759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상 소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 규정이 법 제정 당시의 만장일치제, 합의제 취지와 다르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최근 소위원회 운영 과정상 확인되었고, 행정법원에서도 위원회가 전례와 관행을 무시하고 위원 3명 의견 일치 없이 의결한 것이 평등의 원칙과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함. 소위원회 운영방식을 다수결로 바꾸는 입법 의도에 맞지 않는 위원회 의결도 이뤄짐. 위원 의견 불일치 사건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다수 있음.

이에 소위원회 구성위원 수와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고, 관례에 근거해 이뤄졌던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경우 위원회 회부 규정을 신설해 위원회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인권 보호 기능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나. 주요내용

- 1) 소위원회 구성위원 수를 3인으로 하고 구성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 2)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시 심의·의결하되, 그 횟수는 3회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 3) 3회 논의 시에도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위원회로 회부하여 의결토록 함(안 제13조제5항).

2.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을 ‘의결 요건’으로 규정하여 충분한 토론과 설득, 숙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합의제 정신을 명문화하고 있음.

최근 인권위는 ‘소위원회에서 진정사건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3인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진정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 하도록 하고, 기존 3인으로 운영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구성하는 내용의 인권위 운영규정 개정을 함.

변경된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규정은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23년간 없었던 새로운 해석으로, 현행법의 ‘의결’을 ‘진정의 인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임. 그러나 ‘의결’은 인용뿐 아니라 기각, 각하 등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의 문언 체계와 입법 취지를 볼 때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률조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위원 3명의 찬성 없이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인권위의 회의 중의 의결은 인용, 기각, 각하 결정 등을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의결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법한 법 해석을 차단하고, 위원회가 인권 보호 기능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3.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은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기반할 필요성에 따라 관행적으로 권고·기각·각하·타 구제절차 이송·수사의뢰 등 모든 결정을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심의해옴.

이에 위원회의 합의제 정신을 관행하고,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유지해온 관행을 제도화하여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 전원이 심의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Ⅲ. 검토의견

고민정의원안은 ① 소위원회를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는 동시에, ②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 안건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시 심의·의결하되, 횟수 제한 범위에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이하 회의체를 의미하는 경우 “전원위원회”라 하고, 기관·조직을 의미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라 함)로 회부하여 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정진욱의원안은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에 인용, 기각, 각하 결정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신장식의원안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고민정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신장식의원안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현행	고민정의위원안	정진욱의원안	신장식의위원안
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u>3명 이상 5명 이하</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④ (생략)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u>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u>으로 의결한다. <단	----- ----- ----- ----<u>3명</u>-----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회의----- ----- ----- ----- -----.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 ----- ----- ----- ----- -----<u>의결</u> (인용, 기각, 각하 결정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u>----- -----. 다

현 행	고민정의위원안	정진욱의원안	신장식의위원안
<u>서 신설></u>			<u>만, 소위원회에 서 심의된 안건 이 의결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위원회로 회부한다.</u>
<u><신 설></u>	<u>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 위 원 전원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u>		
<u><신 설></u>	<u>④ 소위원회에 서 심의된 안건 이 의결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다시 심의·의 결하되 그 횟수 는 3회를 초과 하지 아니한다.</u>		
<u><신 설></u>	<u>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결 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는 해당 안건은 위원회로 회부 하여 의결한다.</u>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¹⁾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3명)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면서,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8조는 상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의 내용과 동일하게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2조는 소위원회의 종류를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구제제2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6개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3조는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상임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정하고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상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소위원회의 종류와 관장) ①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다음 각 호를 두어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침해구제제1위원회: 조사총괄과 관장 사항

2. 침해구제제2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관장 사항

3.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관장 사항

4. 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및 성차별시정팀 관장사항

5.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및 장애차별조사2과 관장사항

6. 군인권보호위원회: 군인권보호국 관장 사항

② 소위원회는 소관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 명의로 심의·의결한다.

제23조(소위원회의 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을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정하며, 각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결정한다.

한편,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³⁾는 전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서는 전원위원회는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⁴⁾

[표-2] 법령상 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구 분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구성	11명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4명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3명~5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2명~4명)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구성위원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 찬성	구성위원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 찬성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전원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전원위원회는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상임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상임위원회는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소위원회는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경 설립된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소위원회를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왔고, 소위원회에서 진정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진정의 인용뿐만 아니라 진정의 기각에 있어서도 위원 3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위원 3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한 경우 다시 상정하여 논의하거나 전원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의결하여 왔음.⁵⁾

그런데, 2023. 8. 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소위원회에서 위원 3명 중 1명은 권고 의견, 나머지 2명은 기각 의견이었는데 소위원회 위원장이 기각으로 결정·선언함에 따라, 2023. 9. 12.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위원 3명 중 1명의 위원은 권고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의 위원은 기각 의견을 냄에 따라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진정인은 그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2024. 7. 26. 서울행정법원은 진정사건 기각결정을 취소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은 법률조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위원 3명의 찬성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설령 법률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도 보더라도 종전과 같은 해석과 관행을 뒤집고 진정사건 기각결정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⁶⁾⁷⁾

5) 서울행정법원 2024. 7. 26. 선고 2023구합82360 판결

6) 서울행정법원 2024. 7. 26. 선고 2023구합82360 판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 10. 28.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의결방식과 관련하여, 4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에서 진정사건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결 선언과 함께 진정사건의 기각 또는 각하 선언을 한다고 결정하였고, 2025. 1. 1. 소위원회 구성을 3명에서 4명으로 변경·시행하였음.

[표-3] 전원위원회 결정 내용

① 2024년 제20차 전원위원회(2024. 10. 28.) 결정사항

- ①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진정사건 처리 안전에 대한 표결결과 진정사건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부결 선언과 함께 진정사건의 기각 또는 각하 선언을 한다.
-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각 소위원회를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 안전에 대한 심의 단계에서 안전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하고, 표결에 나아갈 경우 인용 찬성 위원 수와 인용 반대 위원 수가 같을 것으로 예상되면, 소위원회는 그 표결에 앞서 해당 안전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규칙 등 개정 여부

- 전원위원회 결정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이 정한 범위 내이기에 별도의 규칙 개정 사항은 없음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1)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위원 3명의 찬성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 2)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도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진정한 측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위원 3명의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만 진정을 기각하여 오다가, 이에 대한 아무런 공론화 및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심지어 이 사건 소위원회 위원의 이의제기가 있음에도, 종전과 같은 해석과 관행을 뒤집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하다.

7) 국가인권위원회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음.

[표-4] 소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2025. 1. 1. 기준)

소위원회 명칭	위원 구성	
	종 전(3명)	변 경(4명)
침해구제제1위원회	김용원 · 김종민 · 이한별	김용원 · 김종민 · 한석훈 · 소라미
침해구제제2위원회	이충상 · 이한별 · 김용직	이충상 · 이한별 · 원민경 · 김용직
아동권리위원회	이충상 · 강정혜 · 소라미	이충상 · 한석훈 · 원민경 · 소라미
차별시정위원회	남규선 · 원민경 · 강정혜	남규선 · 원민경 · 김용직 · 강정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남규선 · 한석훈 · 김용직	남규선 · 이한별 · 김용직 · 강정혜
군인권보호위원회	김용원 · 한석훈 · 원민경	김용원 · 한석훈 · 이한별 · 강정혜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개정안들은 소위원회 구성을 3명으로 법정화(고민정의원안)하고, 소위원회 등은 만장일치로 의결(고민정의원안 및 신장식의원안)하도록 하거나 의결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정진욱의원안)함으로써,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회 등의 의결정족수의 해석·적용을 둘러싼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합의제 정신에 기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소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고민정의원안은 3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정화하고 있는데, 2025. 1. 1.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3명에서 4명으로 변경하기 전까지 2001. 11. 25.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20여년간 3명의 위원

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에 온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2001. 5. 24. 제정, 2001. 11. 25. 시행) 당시에는 소위원회를 3명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는데,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2005. 7. 29. 일부개정·시행)을 통하여 상임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위원회 구성을 현행과 같이 하한 및 상한(3명 이상 5명 이하)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⁸⁾

둘째,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고민정의원안은 소위원회 의결을 만장일치제로 변경하고 3회 재심의에도 의결되지 아니하면 전원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신장식의원안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결을 만장일치제로 변경하되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면 전원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고 있음.

[표-5] 고민정의원안 및 신장식의원안 비교

구 분	고민정의원안	신장식의원안
만장일치제 대상 회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소위원회
미의결 시 조치	3회 재심의 후 전원위원회 회부	전원위원회 회부 (소위원회만 해당)

8)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법」(2001. 5. 24. 제정, 2001. 11. 25. 시행) 제12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2005. 7. 29. 일부개정·시행)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만장일치제로 변경함에 따라 의사 형성·결정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면 인권위원 11명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로 하여금 책임 있고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먼저, 고민정의원안과 신장식의원안은 만장일치제의 도입 범위가 다른데,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소관 사항⁹⁾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만 만

9)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9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구금·보호시설과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직권조사 개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소관 부서는 해당 소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 및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긴급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5. 전원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6.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7호 및 제28조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제25조(소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제3항의 직권조사의 개시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사건 관련하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필요한 사항
4.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사건에 대한 합의권고, 조정위원회 회부, 법률구조의 결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의 구금·보호시설과 법 제50조의4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6. 전원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장일치제로 변경할지 상임위원회까지 만장일치제로 변경할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2001. 5. 24. 제정, 2001. 11. 25. 시행) 당시에는 소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2005. 7. 29. 일부개정·시행)을 통하여 상임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구성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였음.¹⁰⁾

다음으로, 고민정의원안의 경우 가급적 소위원회에서의 합의 또는 의견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대 3회의 재심의 기회를 부여한 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위원회 심의가 다소 지연될 수 있어 보이므로 재심의 횟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신장식의원안의 경우 상임위원회에도 만장일치제를 도입하면서 전원위원회 회부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한데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고려하여 전원위원회 회부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 법 제19조제6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관한 사항

③ 소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 회부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법」(2001. 5. 24. 제정, 2001. 11. 25. 시행)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2005. 7. 29. 일부개정·시행)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②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셋째, 의결 개념 명시와 관련하여, 정진욱의원안은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에 인용, 기각, 각하 결정 등이 포함됨을 괄호를 사용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인용, 기각, 각하 결정 등을 함에 있어 전원위원회에서는 각각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는 각각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회의체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살펴보면, 의결정족수를 ‘~~ 과반수 또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로서, 개정안과 같이 ‘~~ 과반수 또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인용, 기각, 각하 결정 등을 포함한다)’한다고 규정하는 방식으로 의결 행위에 따른 의사 결정의 결과 또는 효과를 괄호로 부연하고 있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의 의결정족수 입법방식이 다른 법령의 의결정족수 규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6] 의결정족수 입법례

구 분	의결정족수 조문 내용
「대한민국헌법」 §49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법」 §109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헌법재판소법」 §16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헌법재판소법」 §23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구 분	의결정족수 조문 내용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법원조직법」 §16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10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무회의 규정」 §6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4①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9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1②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7조의10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 의 처

02)6788-5017